

## 연금시장리뷰 18호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연금제도방안 : 선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성대학교 : 보건관리학과 오은환 교수 (031-299-0753, oh@uhs.ac.kr)

##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연금제도방안 : 선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전체 국민 중에서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들에 비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며 노후소득의 주요원이 될 연금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를 맞이한 선험국들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세계 최장수국가이며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연금제도에 있어서 불충분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고령화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성 있는 연금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탈리아는 연금지출에 대한 공적부담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재정지출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현실성 있게 공적연금의 급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은 민간연금에 꾸준히 의존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의한 재정부담은 심각하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모두 보장성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노후소득을 민간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에 꾸준히 의존하고 있으나 보장성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제도적으로 공적부담의 비중을 낮추면서 민간연금부문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연금에 대한 의존은 높으나 재정위기에 따라 보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공적보장은 보장성이 낮아 노인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빈곤자인 상황이므로 공적 보장성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제도방안으로는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 또는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기초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적절히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험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연금방안에 있어 어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간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 초고령사회의 도래**

○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전체 국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미 19세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선진국의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중반을 통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세계에서 주된 이민국가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늦은 편에 속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며 노후소득의 주요원이 될 연금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      | 도달 연도         |               |                | 소요년수             |                    |
|------|---------------|---------------|----------------|------------------|--------------------|
|      | 고령화사회<br>(7%) | 고령사회<br>(14%) | 초고령사회<br>(20%) | 고령사회<br>(7%→14%) | 초고령사회<br>(14%→20%) |
| 한국   | 2000          | 2018          | 2026           | 18년              | 8년                 |
| 일본   | 1970          | 1994          | 2006           | 24년              | 12년                |
| 이탈리아 | 1927          | 1988          | 2006           | 61년              | 18년                |
| 미국   | 1942          | 2015          | 2036           | 73년              | 21년                |
| 독일   | 1932          | 1972          | 2009           | 40년              | 37년                |
| 프랑스  | 1864          | 1979          | 2018           | 115년             | 39년                |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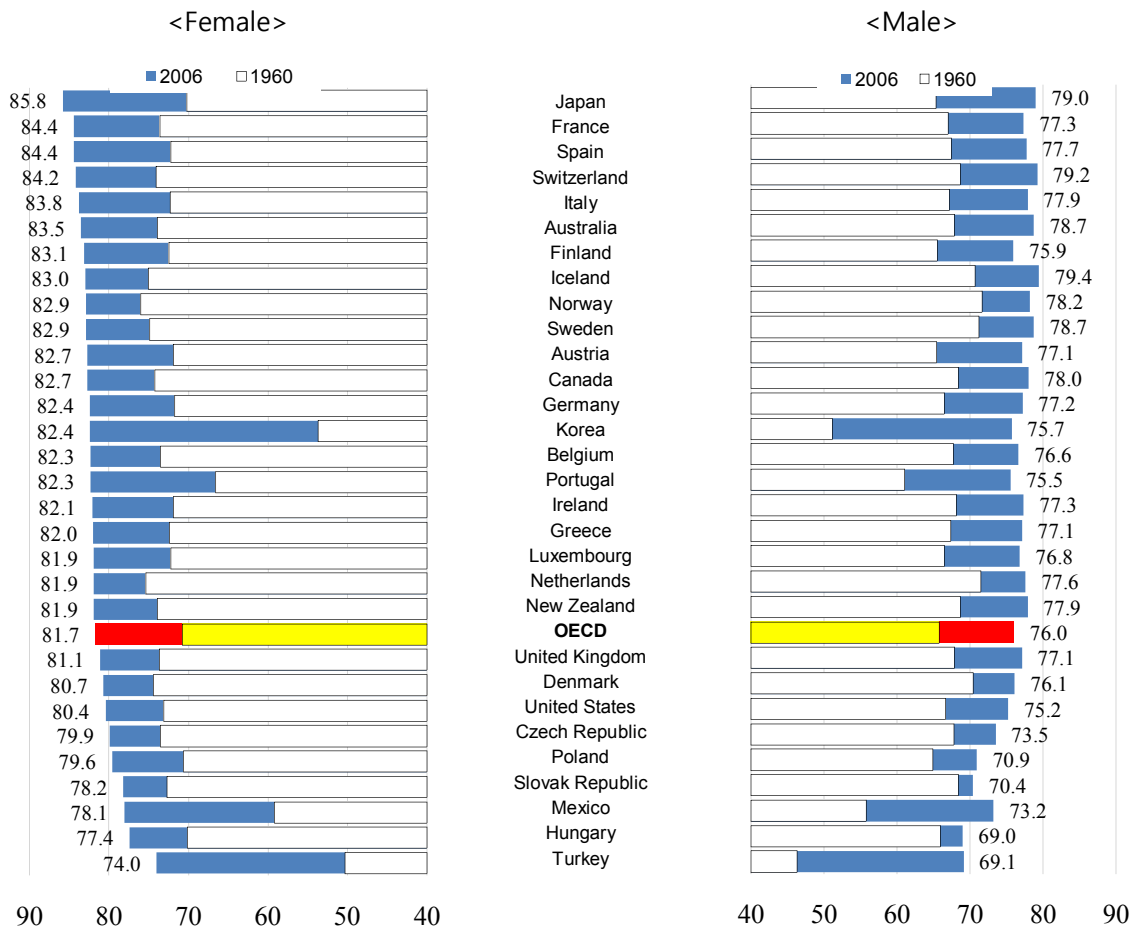
## II. 초고령사회의 양상

### 1. 평균수명의 연장

####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절대수 증가

-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음
- 1960 년 OECD 국가들의 평균수명은 여성 70.8 세, 남성 65.8 세였으나 약 반세기가 지난 2006 년 현재 이 수치는 각각 81.7 세와 76.0 세로 약 11 세 정도 늘어났으며, 앞으로 연장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들 중 평균수명 연장에 가장 큰 성과가 큰 나라는 한국으로 1960 년의 평균수명은 여성 53.7 세, 남성 51.1 세였으나 2006 년에는 각각 82.4 세와 75.7 세로 여성의 경우 약 20 세, 남성의 경우 약 15 세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OECD 국가들의 평균수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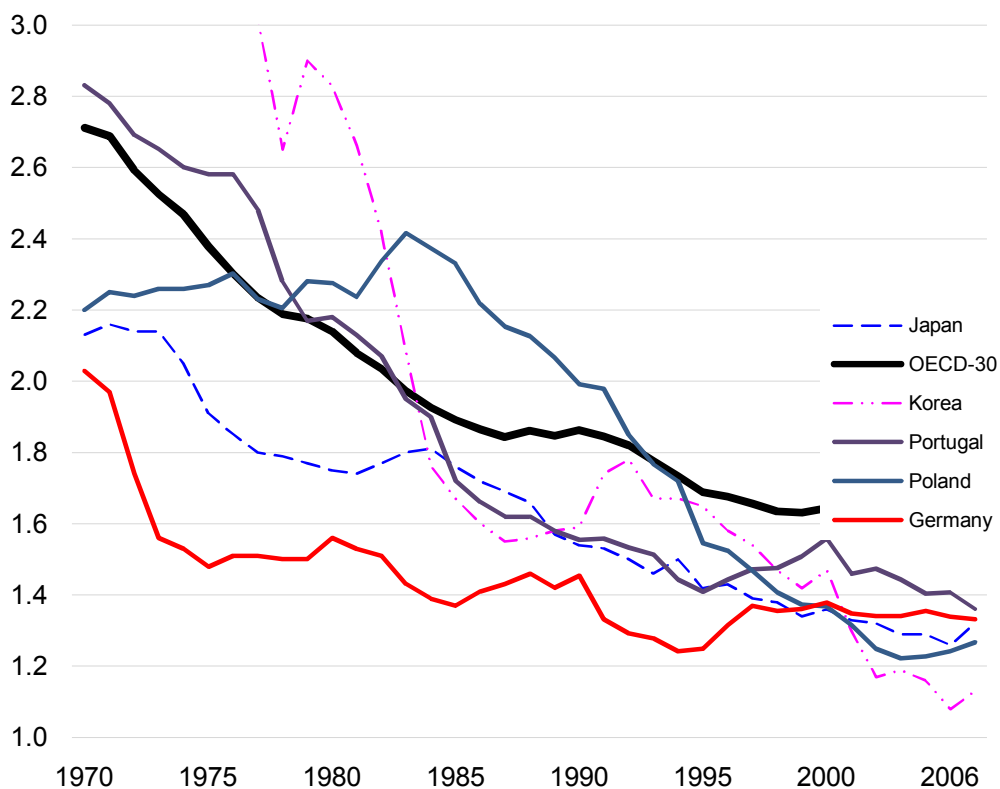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2. 저출산

### ○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저출산이 고령화의 한 원인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세대존속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 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무너졌음
-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개인주의의 만연,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발생, 사회복지제도 미흡,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은 60, 70년대만 해도 OECD 국가들의 출산율에 비해 2 배 정도 높은 정도로 고출산 국가였으나 정부의 저출산 장려정책과 사회환경요인으로 인해 1984년 합계출산율은 1.76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2 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2006년 현재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예상됨

<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3. 은퇴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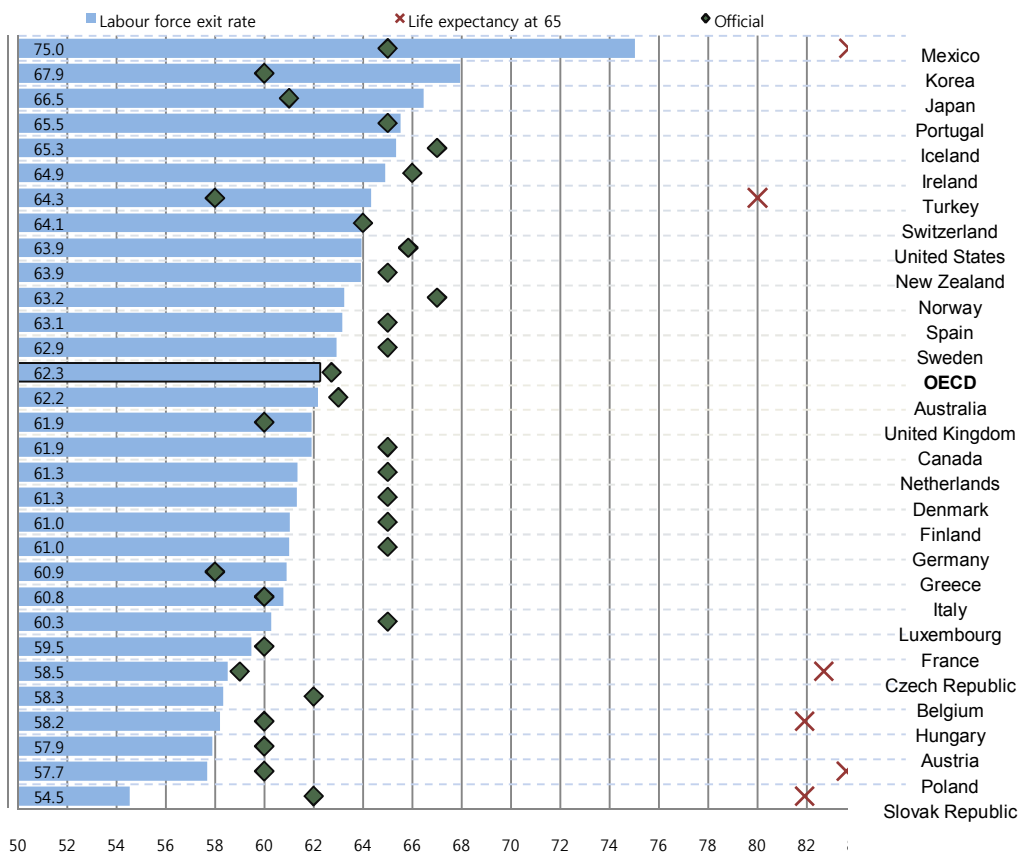
####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은퇴연령 이전에 퇴직하고 있음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은퇴연령 이전에 퇴직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2007 년 OECD 평균 공식적인 퇴직연령은 62.9 세이지만 실제로는 62.3%의 사람들이 조기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퇴직연령은 60 세이지만 실제로는 67.9%의 사람들이 조기퇴직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조기퇴직율을 보이는 것임

#### ○ 조기퇴직으로 인해 소득없이 사망까지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짐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65 세 기대수명이 80 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보다 훨씬 이전에 조기퇴직함으로써 퇴직후 사망까지 소득없이 생활하는 기간이 약 30 년에 이름

< 퇴직율과 공식퇴직연령 비교(2007, 여성) >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다양한 조기퇴직 원인이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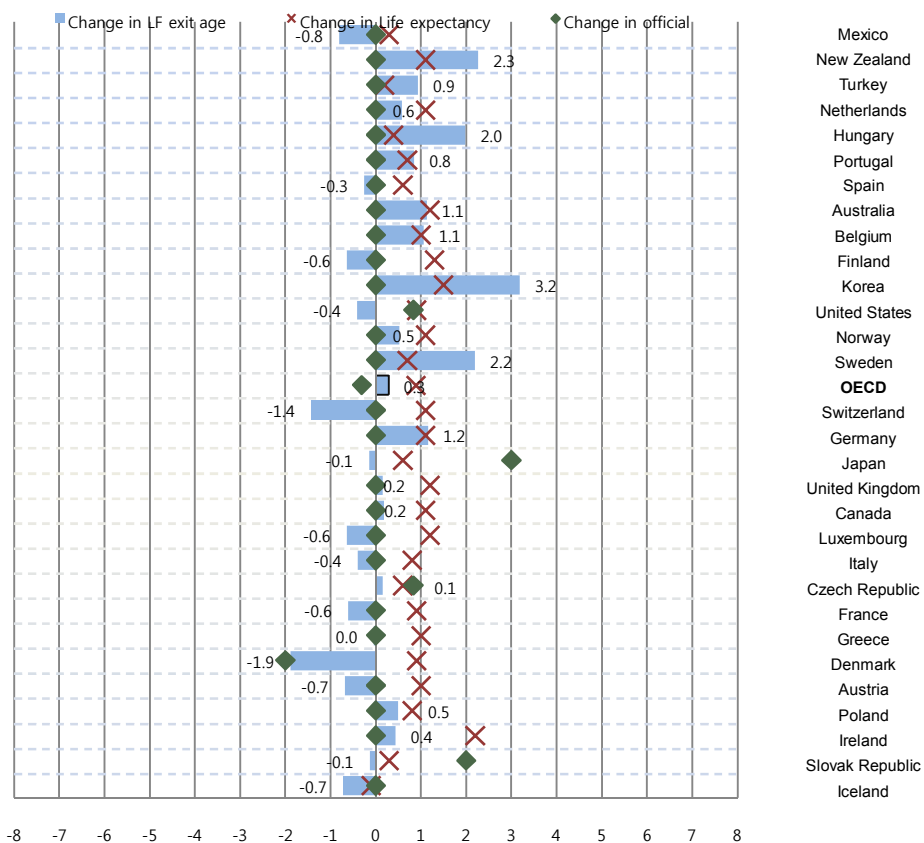
-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비용부담, 고령자의 신기술 적응력 부족,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적 조직문화,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재, 사회제도적 안전망 미비, 노동자의 건강상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직, 자발적 퇴직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제가 불황일 때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조기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함

- 사회구조적으로는 1)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사회의 조기퇴직연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늦춰지지 않고 있으며 3) 오히려 노동력의 유출(labor force exit), 즉 조기퇴직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 남성의 조기퇴직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수명, 공식은퇴연령, 노동력 유출연령 각각의 변화 비교(2000~2007, 남성) >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Ⅲ. 선형국의 고령사회에서의 연금제도

#### 1. 일본

○ 세계 최장수국가이며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연금제도에 있어서 불충분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퇴직 전의 소득대비 연금수령 금액을 비교하는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s)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 평균소득자가 59.0%인데 비해 일본은 33.9%에 그치고 있으며, 저소득자에 있어서도 OECD 평균 71.9%에 비해 47.1%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65 세 이상 노인 중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34.4%로 OECD 국가 평균인 23.8%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3.3%에 불과한 것에 비해 22.0%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공적연금에 대한 비중은 GDP 중 8.7%를 차지하여 OECD 평균 7.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차츰 민간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45%가 퇴직 후의 소득보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민간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앞으로 더욱 고령화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성 있는 연금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 이탈리아

○ 연금지출에 대한 공적부담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재정지출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탈리아는 1995 년부터 10 년간 공적연금 지출을 23% 증가시킴으로써 2005 년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출하고 있음

- 공적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의 경우 평균 16%에 불과한데 비해 이탈리아는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정도로 공적연금이 공공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양육, 교육 등과 같은 다른 공공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을 구축(crowding out)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평균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연금수급연령을 늦추고 급여범위를 늦추는 법안이 제기되었으나 저항에 부딪혀 발효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현재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한때 연금천국이라 불리던 그리스의 경우 평균 61 세에 은퇴하여 재직 때 임금의 95%를 연금으로 받음으로써 현재 국가부채는 GDP의 120%인 3000 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공적연금지출 축소가 재정부담 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현실성 있게 공적연금의 급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3. 독일

- 민간연금가입비율은 높으나 보장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독일은 민간연금 중에서 임의가입부문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연금에 가입함.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연금 가입률이 높아 미국이나 영국의 같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높은 가입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급여수준)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같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민간연금에 대한 꾸준한 의존으로 인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으나 연금 전체 보장성은 상당히 낮은 편
    -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3%이고(OECD 평균 59%) 저소득자 역시 43%(OECD 평균 71.9%)으로 낮으며, 65 세 이상 노인들 중 일을 하는 비율은 32.2%로 OECD 평균 23.8%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독일은 민간연금에 꾸준히 의존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의한 재정부담은 심각하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모두 보장성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 4. 프랑스

- 노년의 소득을 공적이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임
  - 프랑스의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85.4%를 공적연금이나 사회안전망급여 등과 같은 공적이전(public transfer)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OECD 평균 61.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헝가리(85.6%)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공지출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 년 12.4%로 이탈리아(14%), 오스트리아(12.6%) 다음으로 높음(OECD 평균 7.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53.3%로 OECD 평균 59.0%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도 61.7%로 OECD 평균 71.9%에 비해 낮은 편이고, 65 세 이상 근로 노인 인구비율도 28%로 OECD 평균 23.8%에 비해 높음
  -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근로자의 미래의 연금급여 보장성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중이며 평균 소득자의 경우 약 20% 정도 삭감하고 있으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높은 공적연금지출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을 늦추도록 하거나 민간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 프랑스는 노후소득을 민간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에 꾸준히 의존하고 있으나 보장성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제도적으로 공적부담의 비중을 낮추면서 민간연금부문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5. 미국

- 민간연금에 대한 의존은 높으나 민간연금 펀드의 손실로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미국의 민간연금제도
- 미국에서는 민간연금과 기타 투자가 노후소득의 44%를 차지할 정도이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24% 포인트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년 민간연금 펀드가 26.2%의 실질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화폐가치로 5 조 4000 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함
  -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38.7%로 OECD 평균 5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도 50.3%로 OECD 평균 71.9%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나, 65 세 이상 근로 노인 인구비율은 20.8%로 OECD 평균 23.8%에 비해 오히려 낮음
  - 노인 인구 4 명중 1 명은 빈곤자로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노인 인구의 빈곤수준이 높은 원인은 평균 소득의 1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때문인데, 이는 OECD 평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헝가리(16%)만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미국은 민간연금에 대한 의존은 높으나 재정위기에 따라 보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공적보장은 보장성이 낮아 노인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빈곤자인 상황이므로 공적 보장성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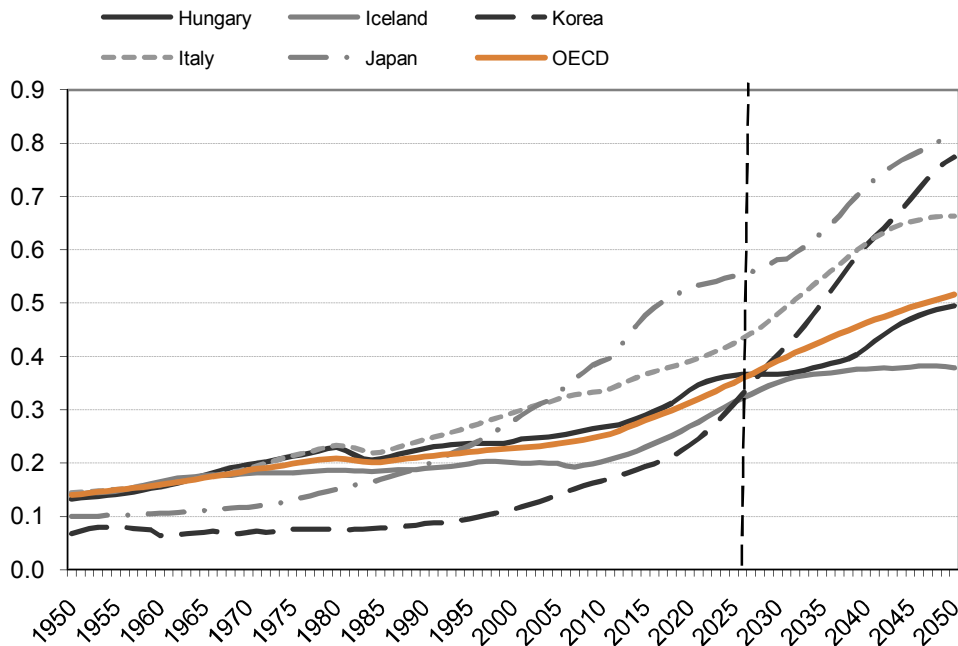
#### IV.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의 연금제도방안

##### 1. 한국의 초고령사회의 양상

-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의 모습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도달년수가 매우 짧고 고령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비는 2030 년경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40 년경부터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인구부양비(1950~2050) >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는 고령인구부양비는 0.330으로 예상되나, 2030년 0.403, 2035년 0.500으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0.608, 2046년 0.715, 2050년 0.774로 예상됨

○ 짧은 기간동안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심각한 고령인구부양비는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함

- 이는 곧 노후의 연금대책에 관한 방안을 의미하며, 인구구조 및 고령인구부양비를 통해 예상할 때 제도적 또는 공적부문에 대한 보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민간 또는 개인적 책임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총수입에 대한 공적연금 기여율 >**

|                 | Pension contribution rate<br>(per cent of gross earnings) |             |             |           |
|-----------------|---|-------------|-------------|-----------|
|                 | 1994  | 1999        | 2004        | 2007      |
| Australia       |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             |             |           |
| Austria         | 22.8  | 22.8        | 22.8        | 22.8      |
| Belgium         | 16.4  | 16.4        | 16.4        | 16.4      |
| Canada          | 5.2   | 7           | 9.9         | 9.9       |
| Czech Republic  | 26.9  | 26          | 28          | 32.5      |
| Denmark         |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             |             |           |
| Finland         | 18.6  | 21.5        | 21.4        | 20.9      |
| France          | 21.5  | 24          | 24          | 24        |
| Germany         | 19.2  | 19.7        | 19.5        | 19.5      |
| Greece          | 20  | 20          | 20          | 20        |
| Hungary         | 30.5  | 30          | 26.5        | 26.5      |
| Iceland         |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             |             |           |
| Ireland         |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             |             |           |
| Italy           | 28.3  | 32.7        | 32.7        | 32.7      |
| Japan           | 16.5  | 17.4        | 13.9        | 14.6      |
| Korea           | 6   | 9           | 9           | 9         |
| Luxembourg      | 16  | 16          | 16          | 16        |
| Mexico          |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             |             |           |
| Netherlands     | 33.1  | 37.7        | 28.1        | 31.1      |
| New Zealand     | No contributions  |             |             |           |
| Norway          |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             |             |           |
| Poland          |   | 32.5        | 32.5        | 35        |
| Portugal        |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             |             |           |
| Slovak Republic | 28.5  | 27.5        | 26          | 24        |
| Spain           | 29.3  | 28.3        | 28.3        | 28.3      |
| Sweden          | 19.1  | 15.1        | 18.9        | 18.9      |
| Switzerland     | 9.8   | 9.8         | 9.8         | 10.1      |
| Turkey          | 20  | 20          | 20          | 20        |
| United Kingdom  |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             |             |           |
| United States   | 12.4  | 12.4        | 12.4        | 12.4      |
| <b>OECD</b>     | <b>20</b>   | <b>20.7</b> | <b>20.2</b> | <b>21</b> |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2. 바람직한 연금제도 방안

### ○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이 공적연금의 기초적인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공적연금이 공공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이는 현대사회 국가가 갖추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설계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많은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부담 문제와 같이 지나친 보장급여의 규모 및 범위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공적연금은 최소한 보장을 제공하는 정도가 적당함
-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평균 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저소득자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등 인구구조변화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음
- 또한 앞으로의 인구구조 및 고령인구부양비를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 ○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보장성의 강화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낮지 않은 편이나 보장성이 상당히 낮아 연금제도의 역할이 무색하며, 이에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민간연금을 중요한 노후소득보전으로 의존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민간연금가입비율은 높으나 보장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노후보장으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노인 4 명중 1 명은 빈곤선 아래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연금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향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보장성의 측면에서 제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인구의 45%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연금설계에 있어 다양한 옵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 또는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기초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적절히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내에서도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연금의 종류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준비하는 바람직함

○ 선협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연금방안에 있어 어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다양한 연금제도 간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간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경상학부 문성현 교수 (031-299-0753, oh@uhs.ac.kr)